

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26일 김포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1일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1월 5일
라. 의결일자 : 2004년 11월 9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 정의 및 배출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출시 혼동을 방지하고,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함.
-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증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가격인상을 실시코자함

나. 주요골자

- 생활폐기물의 세부 정의 변경
- 가정특수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에 대한 정의 변경
-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
- 건설페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건설페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2조)
- 대형폐기물 배출증의 품목 단순화(7종→4종)
- 가정특수 쓰레기를 가정특수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로 분리
-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증 가격인상(10~20%)인상

-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배출 수수료 조례 명시(1천원/세대/월)
- 음식물쓰레기 중 전용용기 사용지역과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위탁자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배출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레기 배출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조례 제22조의 쓰레기 봉투 등의 제작 및 공급판매와 관련된 세세한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.
- 동조례 제29조와 제30조가 삭제되는 것은 이번 회기에 제정되는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신설되는 관계로 삭제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 다만, 대형폐기물배출증 판매가격과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의 인상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의 결정이 인정됨.
- 동조례 제27조 생활폐기물 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역은 처리대행자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경우 편의성 및 효율성을 기할수 있으나 직접 징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